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14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이달곤·김영식·김상훈

조수진 · 정진석 · 윤두현

류성걸・김승수・서병수

이주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면서,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,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,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,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	제49조(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
등)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	등) ①
(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	
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임대조	
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「재난 및 안</u>
	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
	재난,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
	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
	간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
	부를 감면하도록 정할 수 있다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